

大田直轄市都市가스事業者에 對한 市稅不均一課稅에
關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1991. 12

內　務　委　員　會

目 次

1. 審査 經過	2
2. 提案說明要旨	2
3. 專門委員 檢討 要旨	3
4. 質疑 及 答辯 要旨	4
5. 討論 要旨	4
6. 審查 結果	4

大田直轄市都市가스事業에 對한 市稅不均一課稅에
關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

審查報告

1991年 12月 27日

內務委員會

1. 審查經過

- 가. 提出日字 및 提案者 : 1991年 12月 18日, 大田直轄市長
나. 回附日字 : 1991年 12月 19日
다. 上程日字 : 第7回 大田直轄市 議會(定期會)
 第6次 內務委員會(1991. 12. 23)
 上程, 審議, 議決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者:財務局長)

가. 提案理由

- 燃料의 現代化에 따른 都市民의 生活便益 圖謀와 쓰레기 減量等 快適한 都市環境 造成을 위한 都市가스 事業이 普及 初期段階로 배관설치비가 過多하게 所要되므로 都市가스事業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받은 都市가스 事業者가 都市가스業에 直接 使用하기 위하여 取得하는 土地 및 建物에 대하여 取得稅와 登錄稅를 課稅 減免하였으나

- 課稅減免 其間이 '91年末로 滿了됨에 따라 同 條例의 不合理한 用語를 整備하여 一定期間 課稅 減免을 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不合理한 用語의 整備 (第 3條, 第 4條)
 - 同 條例에 의한 課稅는 100分의 50으로 不均一 課稅함에 따라 同條例의 用語 中 課稅 免除 및 免除 用語를 不均一 課稅 및 輕減으로 調整
- 適用時限을 延長하고자 함 (附則 第 ②項)
 - 從前에는 適用時限을 1991年 12月 31日까지로 하였으나, 1994年 12月 31日 까지로 延長하고자 함.

3. 專門委員 檢討 要旨(專門委員 : 安鍾贊)

本 改正條例案은 燃料의 現代化에 따른 都市가스 事業이 普及初期段階로서 배관설치비가 過多하게 所要되므로 都市가스業者가 都市가스業에 直接 使用하기 위하여 取得하는 財產에 대한 課稅 免除 條例가 '91年末로 時限 滿了됨에 따라 不合理한 用語의 整備와 時限을 延長하여 地方稅法 第 9條의 規定에 의하여 内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事案으로서

本案은 自動車管理法 第2條 및 第 49條의 規定에 의하여 中古自動車 賣買業 許可를 받은 者의 賣買를 為한 車輪의 登錄稅 및 取得稅를 地方稅法 第9條에 依據 課稅免除 또는 不均一課稅 處理한 現行 條例 規定 中 附則의 適用時限을 延長하여 適用하려는 것으로 이는 中古 自動車 去來 秩序 確立에 寄與할 것으로 判斷되어 改正이 妥當한 것으로 思料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 省略

5. 討論要旨 : 省略

6. 審査結果 : 修正案 可決

大田直轄市都市ガス事業者에 對한 市稅不均一課稅에 關한
條例中改正條例案에 對한 修正案

提出年月日 : 91. 12. 26

提 案 者 : 內務委員長

1. 修正理由

向後 3年間을 課稅減免함은 特定 事業者에 對한 過度한 特惠賦與라는 誤解의 素地가 있으므로 本 事業의 特殊性을 勘案하여 課稅免除해주되 그 期間을 1年間으로 限定코자 함.

2. 主要骨子

- 都市ガス事業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받은 都市ガス事業者가 都市ガス업에 直接 使用하기 為하여 取得하는 土地 및 建物에 대하여 取得稅와 登錄稅를 課稅減免함에 있어 課稅減免 適用 期間이 91年으로 滿了됨에 따라
- 減免 適用 時限을 延長하여 適用코자 함. (附則)

大田直轄市都市가스事業者에 對한 市稅不均一課稅에 關한
條例中改正條例案에 對한 修正案

大田直轄市都市가스事業者에 對한 市稅不均一課稅에 關한
條例改正條例案中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 案 附則 第2項中 “1994年 12 月 31日까지”를 “1992年 12月 31
日까지”로 한다.

修 正 案 對 比 表

改 正 案	修 正 案
<p>附 則 (條例 第1706號)</p> <p>② (適用時限)</p> <p>.....</p> <p>1994年 12月 31日까지 施行 한다.</p>	<p>附 則</p> <p>② (適用時限)</p> <p>.....</p> <p>1992年 12月 31日까지 施行 한다.</p>

大田直轄市 都市ガス 事業者에 對한 市稅不均一課稅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 案

議案番號

62

1991. 12. 16.

大田直轄市長

1. 提案理由

- 가. 燃料와 現代化에 따른 都市民의 生活便益 圖謀와 쓰레기 減量等 快適한 都市環境 造成을 위한 都市ガス 事業이 普及 初期段階로 배관설치비가 過多하게 所要되므로 都市ガス事業法 第 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받은 都市ガス 事業者が 都市ガス業에 直接 使用하기 위하여 取得하는 土地 및 建物에 대하여 取得稅와 登錄稅를 課稅 減免하였으나
- 나. 課稅減免 其間이 '91年末로 滿了됨에 따라 同 條例의 不合理한 用語를 整備하여 一定期間 課稅 減免을 하고자 함.

2. 主要骨子

가 不合理한 用語의 整備 (第 3條, 第 4條)

- 同 條例에 의한 課稅는 100分의 50으로 不均一 課稅함에 따라 同 條例의 用語 中 課稅 免除 및 免除 用語를 不均一 課稅 및 輕減으로 調整

나 適用時限을 延長하고자 함 (附則 第 ②項)

- 從前에는 適用時限을 1991年 12月 31日까지로 하였으나, 1994年 12月 31日 까지로 延長하고자 함.

3. 參 考 事 項

○ 都市ガス事業法

第 3條 (事業의 許可) ① 都市ガス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서울特別市長, 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이하“市·道知事”라 한다)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事項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事項을 제외한다)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 地方稅法

○ 第 7條 (公益等 事由로 인한 課稅免除 및 不均一 課稅)

① 地方自治團體는 公益上 其他의 事由로 인하여 課稅를 不適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課稅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第 9條 (課稅免除 等을 위한 條例) 第 7條 및 第 8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課稅免除, 不均一課稅 또는 一部課稅를 하고자 할 때에는 内務部長官의 許可를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써 정하여야 한다

○ 條例改正許可 : '91. 11. 21. (内務部長官)

○ 立 法 豫 告

○ 其 間 : '91. 11. 23 ~ '91. 12. 12 (20日間)

○ 方 法 : 揭示 公告 및 市 公報 揭載 ('91. 11. 28 第 74 號)

○ 結 果 : 意見 없음

대전직할시 조례 제 호

대전직할시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도가스사업자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과세면제에”를 “불균일 과세에”로 한다

제4조 중 “(면제신청)”을 “(경감신청)”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과세면제를”을 “불균일 과세를”로 하며 동조 제2항 단서의 “과세면제 대상”을 “경감대상”으로 하고 “면제”를 “경감”으로 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 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3조 (사무처리의 위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u>과세면제</u> 에 관한 사무는 당해 과세 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 3조 (사무처리의 위임) ----- ----- <u>불균일과세에</u> ----- ----- ----- -----
제 4조 (<u>면제신청</u>) 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u>과세면제를 받고자</u>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자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u>과세면제 대상</u> 임을 알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u>면제</u> 할 수 있다.	제 4조 (<u>경감신청</u>) ① ----- ----- <u>불균일과세</u> ----- ----- ----- ----- ② ----- ----- ----- ----- ----- 다만, ----- <u>경감대상</u> ----- ----- ----- <u>경감</u> -----.
부 칙 (조례 제 1706 호) ② (<u>시행기간</u>) 이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시행 한다.	부 칙 (조례 제 1706 호) ② (<u>적용시한</u>) ----- ----- <u>1994년 12월 31일까지</u> ----- -----.